

보도일시: 2021. 12. 31.(금) 10:00 이후

보도참고자료

제목: 고용노동부, 2022년 이렇게 달라집니다

2022년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소관 정책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.

붙임 2022년 달라지는 주요 사업 내용. 끝.

고용노동부 대변인

최저임금액 인상

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(☎ 044-202-7970)

- ☐ 2022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9,160원으로 인상됩니다.
 -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3,280원,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1,914,440원(월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,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)입니다.
 -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,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.
 - 다만, 수습사용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%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.
 - * (수습사용중이어도 감액적용 불가) ①1년 미만 근로계약 체결, ②단순 노무종사자(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)
- ☐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며, 2022년의 경우 월 환산액 기준으로 '산정단위 1개월 초과 상여금'은 10%, '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'는 2% 각 초과금액이 산입됩니다.
 - * (예시)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, 상여금 191,444원(9,160원×209시간×10%), 복리후생비 38,288원(9,160원×209시간×2%) 이상 지급되는 금액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됨

☞ (참고) 고용노동부 누리집>정보공개>법령정보>훈령·예규·고시

<최저임금액 인상>

- ☐ 추진배경 : 최저임금법령에 따라 2022년 최저임금액 인상
- ☐ 주요내용
 - 2022년 최저임금액: 시간급 9,160원
 - 2021년 최저임금 산입범위: 월환산액 기준 상여금 10%, 복리후생비 2% 각 초과금액
- ☐ 시 행 일 : 2022년 1월 1일

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시행

고용노동부 전국민고용보험추진단 (☎ 044-202-7919)

-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퀵서비스 기사·대리운전 기사도 고용보험이 적용되어,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
-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의 노무 제공부터 적용됩니다.

☞ (참고) 고용노동부 누리집>정보공개>법령정보>입법예고>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

<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주요내용>

- 추진배경 : 일하는 모든 국민이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“전국민 고용보험” 추진
- 주요내용
 -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직종 확대
 - 기존 12개 직종 +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퀵서비스기사·대리운전기사 고용보험 당연적용
- 시 행 일 : 2022년 1월 1일

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

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(☎ 044-202-7973, 7541)

- 2022년부터 5인이상 30인미만의 민간기업도 명절,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(일요일은 제외)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.
 - * 민간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주 1회 이상의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므로 관공서 공휴일 중 일요일은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공휴일에서 제외
- 종전에는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의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었으나, 2020년부터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.
 - * (시행시기) △ 300인 이상 및 공공기관 : 2020.1.1. △ 30~299인 : 2021.1.1. △ **5~29인 : 2022.1.1.**
- 한편, 공휴일(대체공휴일 포함)에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(휴일대체)할 수 있습니다.
- 만약 휴일대체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가 공휴일(대체공휴일 포함)에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*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.
 - * △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→ 50% 가산 △8시간 초과한 휴일근로→ 100% 가산

☞ (참고) 고용노동부 누리집 > 정책자료 > 정책자료실(사장님 달력의 빨간날은 우리도 쉬는 날이에요, 홍보리플릿)

<관공서 공휴일의 민간기업 적용 확대>

- 추진배경 :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및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
- 주요내용
 -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의 민간기업 적용(유급휴일 의무화)
- 시 행 일
 - '20.1월 : 300인 이상 → '21.1월 : 30~299인 → '**22.1월 : 5~29인**

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제도 시행

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(☎ 044-202-7472)

- 2022년 5월 19일부터 고용상 성차별·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 위반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제도가 시행됩니다(「남녀 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시행).
- 근로자가 성별을 이유로 모집·채용, 임금 등 고용상 차별을 받은 경우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, 피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차별적 처우등*의 피해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하면, 노동위원회는 조사·심문 등을 거쳐 차별적 처우 등의 중지, 적절한 배상 등의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.
- * 고용상 성차별,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 위반
-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☞ (참고) 고용노동부 누리집 > 정책자료 > 정책자료실

<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신설>

- 추진배경 : 고용상 성차별 등에 대한 실효적인 구제절차 마련
- 주요내용
 - 노동위원회에 고용상 성차별,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위반에 대한 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 도입
- 시 행 일 : 2022년 5월 19일

'3+3 부모육아휴직제' 시행 및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를 인상

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(☎ 044-202-7477)

- 2022년부터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,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하는 '3+3 부모육아휴직제'가 시행됩니다.
- 생후 12개월 내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에게 각각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월 300만원(통상임금 100%) 지원함으로써 초기 영아기 자녀에 대한 맞돌봄 문화 확산 및 일·가정 양립을 지원합니다.

<첫 3개월의 육아휴직급여 지급수준>

구 분	현 행	개 편
부모 중 한사람만 육아휴직시	▶통상임금 80%	▶통상임금 80%
부모 모두 육아휴직시	▶(첫번째) 통상임금 80% ▶(두번째) 통상임금 100%	▶(첫번째) 통상임금 100% ▶(두번째) 통상임금 100%

- 개정 내용은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'22.1.1. 이후 육아휴직을 최초 개시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.
- 또한, '22년부터 육아휴직 4~12개월제 급여를 현행 통상임금 50%(상한 월120만원)에서 통상임금 80%(상한 월150만원)로 인상합니다.
- 그간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1~3개월에 대해 통상임금 80%(상한 월 150만원)와 4~12개월에 대해 통상임금 50%(상한 월120만원)를 지급하였지만, '22년부터는 육아휴직 1~12개월 전체에 대해 모두 통상임금 80%(상한 월150만원)를 지급합니다.

<일반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비교>

구 분	현 행	개 편
1~3개월	▶통상임금 80%(상한 월 150만원)	⇒ ▶통상임금 80%(상한 150만원)
4~12개월	▶통상임금 50%(상한 월 120만원)	

- 개정 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급여부터 적용됩니다.

<'3+3부모육아휴직제' 및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 인상>

- **추진배경** : 생후 12개월 이내 초기 영아기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육아휴직 급여 인상을 통해 맞돌봄 문화 확산 및 육아휴직 활성화 도모
- **주요내용**
 - ('3+3 부모육아휴직제')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, 부모 각각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월 300만원(통상임금 100%) 지원
 - (소득대체율 인상) 육아휴직 4~12개월째 급여를 현행 통상임금 50%(상한 월 120만원)에서 통상임금 80%(상한 월 150만원)로 인상
- **시행일** : 2022년 1월 1일

**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'22년 지원규모 확대
및 조기취업성공수당 신설**

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(044-202-7193)

- 2021년 1월 1일부터 미취업 청년, 저소득층,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안정을 동시에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.
-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연령, 소득, 재산, 취업경험 요건에 따라 I·II 유형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.

<유형별 지원내용 및 지원요건>

유형	지원내용	지원요건			
		연령	재산	소득	취업경험
I 유형	요건심사형	15~69세 (청년은 18~34세)	4억원 이하	중위소득 60% 이하	2년 이내 100일 (또는 80시간) 이상
	선발형			중위소득 60% 이하 (청년: 120%이하)	2년 이내 100일 (또는 80시간) 미만 (청년: 무관)
	II유형		무관	중위소득 100%이하 (청년: 소득 무관)	무관

- 2022년도에는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의 보다 폭넓은 보호를 위해 I유형 지원 규모를 40만명에서 50만명으로 확대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.
-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수급자의 신속한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1월1일부터 조기취업성공수당을 신설해 지원할 예정입니다.
- * 지원내용: 구직촉진수당을 3회차 이내로 수급하고 2022.1.1.이후 취업한 경우 지급요건 충족 시 50만원 1회 지급

<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지원 규모 10만명 확대>

- **주요내용**: 2022년도에는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의 보다 폭넓은 보호를 위해 I유형 지원 규모를 40만명에서 50만명으로 대폭 확대하여 지원
- **시행일** : 2022년 1월 1일

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신설

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(☎ 044-202-7344, 7448)

- 청년의 취업을 돕고,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「**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**」을 2022년 1월부터 시작합니다.
-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월80만원씩 최대 1년간 인건비를 지원합니다.

☞ (참고) 고용노동부 누리집 > 보도자료 > 사업공고문

<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>

□ 주요내용

- (지원대상) 5인 이상 중소기업* 및 취업애로청년**
 - * 단, 성장유망업종, 미래유망기업, 지역주력산업 기업 등은 5인 미만이어도 지원
 - **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, 고졸 이하 학력 등
 - (지원수준)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80만원, 최대 960만원(최대 12개월)
 - (지원한도) 기업의 사업참여 신청 직전년도 연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%(최대 30명)까지 지원(단, 비수도권 지역은 100% 지원)
 - (지원요건)
 - 청년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
 - 4대보험 가입, 주 30시간 이상 근로
 -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 지급
 - 인위적 감원 금지
 - (신청방법) 사업 누리집(www.work.go.kr/youthjob)에서 온라인 신청
- 시 행 일 : 2022년 1월 중

저소득 플랫폼종사자 등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확대

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(☎ 044-202-7350)

- 고용보험 가입확대를 위해 **소규모사업 저소득 플랫폼종사자(퀵서비스, 대리운전 기사)의 고용보험료 지원**이 신설됩니다.
 -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월보수 230만원 미만인 플랫폼종사자와 그 사업주(계약당사자)는 고용보험료의 80%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 - 소규모사업 저소득 근로자·예술인·특고의 사회보험 가입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도 계속됩니다.
 - 2022년에는 지원대상이 확대되어, 10인 미만 사업의 **월 보수 230만원 미만*인(2021년 220만원 미만)** 근로자·예술인·특고와 그 사업주가 지원받을 수 있으며,
 - 특히, 일용근로자 경우 지원요건을 완화*하여 지원신청일로부터 **사회보험 가입이력이 6개월간 없는 경우에도**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- * ('21년) 1년간 사회보험 가입이력이 없을 것 → ('22년) 6개월간 사회보험 가입 이력이 없을 것

☞ (참고) 고용노동부 누리집>정보공개>법령정보>훈령·예규·고시

<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사업 개요>

- **주요내용** : 소규모사업 저임금 근로자·예술인·특고의 사회보험가입확대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사회보험료 부담분의 일부를 지원
 - **지원대상 및 수준**
 - (지원대상) : 10인 미만 사업, 월평균보수 230만원 미만, 근로자·예술인·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그 사업주
 - (지원수준) : 근로자 고용보험+국민연금 보험료 부담분의 80%
예술인·특고(플랫폼종사자 포함) : 고용보험료 부담분의 80%
- 시 행 일 : 2022년 1월 1일

K-Digital Training, 새로운 훈련유형 신설

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(☎ 044-202-7137)

- K-Digital Training에 새로운 훈련유형이 신설되어 보다 많은 훈련기관, 선도기업의 참여를 통해 다양한 지역에 양질의 훈련을 제공하게 됩니다.
- K-Digital Training의 훈련유형은 디지털·신기술 아카데미, 벤처·스타트업 아카데미, 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, 지역 주도형 아카데미 총 4가지로,
- 기존 훈련유형인 디지털·신기술 아카데미 외에, 민간 협·단체, 디지털 선도기업,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(RSC)가 각 주도하는 벤처·스타트업/디지털 선도기업/지역 주도형 아카데미가 신설되었습니다.
- 2022년 1차 공모는 4가지 훈련유형에 대한 통합공모 방식으로, 지난 11월 18일에 실시하여 2022년 2월 및 4월에 공모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.

☞ (참고) 고용노동부 누리집>보도자료>“22년 상반기 K-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 공모 실시”

<K-Digital Training의 새로운 훈련유형 신설>

- 추진배경 : 「민·관 협력 기반의 SW인재양성 대책」(6.9, 관계부처 합동)에 따라 SW인력난 대응과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 주도형 인재양성 추진
- 주요내용
 - K-Digital Training 내, 민간 협·단체, 디지털 선도기업,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(RSC)가 주도하는 새로운 훈련유형을 신설, 추진
- 시 행 일 : 2021년 8~10월 훈련과정 선정, '21년 말부터 훈련과정 본격 개설

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'최소 훈련시간' 요건 완화

고용노동부 일학습병행책과 (☎044-202-7309)

- 사업주가 재직근로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요건 중 '최소 훈련시간'이 4시간 이상으로 완화됩니다.
- 기업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한 최소 훈련시간이 “4시간 이상”으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
-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실시하는 훈련과정부터 적용됩니다.

☞ (참고)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>통합검색>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>㉞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[시행 2022. 1. 1.] 제22조제1항제1호

<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요건 완화>

- 추진배경 : 주52시간제, 디지털 전환 등에 따라 비대면 훈련, 짧은 시간 맞춤형 훈련방식(마이크로러닝)을 선호하는 기업 현장에 맞지 않는다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규제 완화에 대한 현장 의견 반영
- 주요내용
 -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훈련과정 인정요건 중 '최소 훈련 시간' 요건 완화
 - 대기업과 우선지원대상기업 간 달리 규정하고 있는 '훈련기간 및 시간' 요건(現: 대기업 2일 16시간, 우선지원 대상기업 1일 8시간) 일원화
 - 훈련기간 요건은 폐지하고 최소 훈련시간은 8→4시간으로 완화
- 시 행 일 : 2022년 1월 1일

중장년 새출발 크레딧 도입

고용노동부 신기술인력양성총괄TF (☎ 044-202-7365)

- ☐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중장년의 새출발을 위한 경력설계를 지원합니다.
- 2022년부터 중소기업 재직자의 경력진단·설계를 지원하기 위한 '중장년 새출발 크레딧'이 새롭게 시행됩니다.
- ☐ 만 45~54세의 중소기업 재직자는 경력설계를 희망하는 경우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,
- 민간 컨설팅 기관에서 제공하는 경력진단, 재취업 분야 상담, 취업 희망업종의 현직자 그룹 컨설팅 등에 사용 가능합니다.

☞ (참고) 고용노동부 누리집 > 정책자료 > 정책자료실

<중장년 새출발 크레딧 도입>

- ☐ 추진배경
 - 평생 직장 개념이 사라지고 생애주기별 일자리의 이동이 잦아지면서, 평생 고용준비를 위한 경력진단 및 설계 필요
 - 대기업의 경우 퇴직예정자에 대한 재취업서비스 제공이 의무화(20.5월)됐으나, 중소기업은 제외되어 사각지대 존재
- ☐ 주요내용
 - (지원대상) 만 45세~54세의 중소기업 재직자('22년 5,000명)
 - (지원방식)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한도(300~500만원) 외 민간 컨설팅 기관에서 사용가능한 '중장년 새출발 크레딧' 100만원 추가 지원
 - (지원내용) 민간 컨설팅 기관을 통해 심층적인 경력진단, 재취업 적합분야 상담, 취업 희망업종의 현직자 그룹 컨설팅 등 지원
 - 경력설계 컨설팅, 심리상담사, 해당 업종의 현직자·인사담당자 등이 1:도로 밀착하여 경력진단·설계의 협진 시스템 제공
 - * 경력설계 결과를 바탕으로 재취업 희망분야의 직업훈련도 연계·제공
- ☐ 시 행 일 : 2022년 상반기

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제도개편 (‘육아휴직 지원금’ 신설 등)

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(☎ 044-202-7480)

- ☐ 만 12개월 초과 자녀 대상 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 대해서는 월 30만원을 지원합니다.(기존과 동일)
- 아울러, '22년부터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가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하면 '육아휴직 지원금'을 월 200만원으로 상향하여 3개월간 지원합니다.(이후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월 30만원 지원)
 - * 이에 따라 현행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금과 대규모 기업에 대한 지원 제도는 '22년부터 폐지
 - ↳ 다만, '21년 이전에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(대규모기업 포함)는 기존 법령에 따라 대체인력지원금 신청 가능
- ☐ 개정 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부터 적용됩니다.

☞ (참고) 고용노동부 누리집 > 정책자료 > 정책자료실

<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개편>

- ☐ 추진배경 :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확대를 통한 육아휴직 등 제도 활성화
- ☐ 주요내용
 - 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월 30만원을 지원하고, 12개월 내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허용 시 특례* 적용
 - * 3개월 이상 육아휴직 허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월 200만원 지원
 - 육아휴직지원금 신설에 따라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금은 폐지
 - 현행 대규모기업에 대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지원금과 육아휴직 등에 대한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은 폐지
- ☐ 시 행 일 : 2022년 1월 1일

우선지원대상기업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강화

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(☎ 044-202-7480)

-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직원 **1인당 인건비 지원 한도**가 인상됩니다.
- 고용노동부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 중인 사업주에게 보육교직원 인건비,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.
- 2022년도부터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 한도가 현행 월 120만원에서 138만원으로 15% 인상됩니다.

<직장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 등에 대한 인건비 지원금액>

월 평균 근무시간	지원금액(1인당 월 지원금액)		
	대규모 기업	우선지원 대상기업	
		현행	개정(22년)
월평균 주 40시간 이상인 경우	600,000원	1,200,000원	1,380,000원
월평균 주 3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인 경우	550,000원	1,050,000원	1,210,000원
월평균 주 20시간 이상 30시간 미만인 경우	400,000원	750,000원	860,000원
월평균 주 15시간 이상 20시간 미만인 경우	300,000원	450,000원	520,000원

- 개정 내용은 **2022년 1월 1일 이후 인건비 지원분**부터 적용됩니다.

☞ (참고) 고용노동부 누리집 > 정책자료 > 정책자료실

<직장어린이집 우선지원대상기업 인건비 지원 강화>

- 추진배경 :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인상을 통해 우수한 보육교직원의 고용을 촉진·유지하고, 사업주의 어린이집 운영 부담을 경감하여 근로자의 보육 부담 경감 및 경력단절 예방 도모
- 주요내용
 - 우선지원 대상기업 직장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직원 1인당 월 지원 금액 한도를 현행 120만원에서 138만원으로 인상(15%)
- 시 행 일 : 2022년 1월 1일

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「고령자 고용지원금」 지원

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(☎ 044-202-7469)

- 고령자의 적극적 노동시장 참여를 통한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근로자 수가 과거 평균 3년보다 증가한 기업에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'고령자 고용지원금'을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.

* ①매분기별로 사업주가 1년 초과 고용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근로자 수 월평균이 ②과거 3년간 월평균 60세 이상 고령자수보다 증가하는 경우 1인당 분기별 30만원 지원

☞ (참고) 고용노동부 누리집>정책자료>대상자별 정책>중장년 "고령자 고용지원금"

<「고령자 고용지원금」제도 도입>

- 추진배경 : 급격한 고령화 및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하고 고령자의 은퇴 희망 연령까지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60세 이상의 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사업주에게 인센티브 부여
- 주요내용
 - (지원대상) 60세 이상 근로자수가 증가한 우선지원대상기업.중견기업 사업주
 - (지원요건)
 - 고용기간이 1년 초과한 60세 이상 근로자수가 과거 3년 평균보다 증가
 - 피보험자 수의 30% 및 최대 30명 이내 지원한도
 - (지원수준) 고령자 수 증가 1인당 분기별 30만원씩 최대 2년간 지원
 - (신청) 매분기별 신청서를 분기 다음달의 말일까지 지방노동관서에 신청
- 시 행 일 : 2022년 1월 1일

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

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(☎ 044-202-7503)

- 2022년 6월 16일부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.
- 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되면 정부가 인증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합니다.(직업소개기관의 소개행위는 법 제정 후에도 인정)
-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된 사업장 소속 가사근로자의 최소근로시간·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이 보장됩니다.
- 시장원리에 기반한 가사서비스 시장 공식화를 통해 가사근로자의 권익이 보호되고, 양질의 가사서비스 일자리가 창출되고, 서비스 품질이 제고되며,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됩니다.

☞ (참고) 고용노동부 누리집>보도자료>“가사근로자 노동권 보장 제도적 기반 마련”

<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>

- 추진배경 : 노동법 및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서 권익보호를 받기 어려웠던 가사종사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가사서비스 시장 활성화 필요
- 주요내용
 -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도 도입·운영
 - 제공기관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상 사용자 책임, 서비스 관리, 정보공개 및 피해보상 책임 등 부담 (직업소개기관의 소개행위는 법 제정 후에도 인정)
 - 이용자는 제공기관과 이용계약 체결, 제공기관에 요금 지불
- 시 행 일 : 2022년 6월 16일

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시행

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(☎ 044-202-7467)

- ‘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제도’가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됩니다.
- *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개정(‘19.8.27.)으로 도입
- *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 : ‘20.1월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 → ‘21.1월 30인 이상 사업장 → ‘22.1월 1인 이상 사업장
- 근로자는 가족돌봄, 본인건강, 학업, 은퇴준비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고, 사업주는 허용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.
- * 허용예외사유: 근속기간 6개월 미만,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한 경우,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, 단축 종료 후 2년 미경과

☞ (참고) 고용노동부 누리집 > 정책자료 > 정책자료실

<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시행>

- 주요내용
 -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개요
 - (단축사유) 가족돌봄(간병), 본인 건강, 학업, 은퇴준비(55세 이상)
 - (단축시간) 주당 소정근로시간 15~30시간 이내로 단축하여야 함
 - (단축기간) 최초 1년(1회 연장하여 총 3년까지 가능, 단 학업사유는 총 1년)
 - (근로조건 보호) 해고나 불리한 처우 금지, 연장근로 요구 불가 등
 - 근로시간 단축 허용 예외사유
 -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
 -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한 경우(직업안전기관에 구인신청 후 14일 이상)
 - 근로시간 분할 수행이 곤란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(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)
 -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종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
- 시 행 일 : 2020년 1월 1일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
2021년 1월 1일 30인 이상 사업장
2022년 1월 1일 1인 이상 사업장

「일자리안정자금」 6개월간 계속 지원

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 ☎ 044-202-7786)

- 영세사업주의 어려운 경영여건과 저임금근로자 고용안정 필요 등을 고려하여 일자리안정자금을 2022년에도 6개월간 계속 지원합니다.
- 2022년에는 월 평균보수 230만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합니다.
- 지원금액은 전 사업장 근로자 1인당 월 3만원을 지원합니다.
* 단시간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상용근로자의 지원수준을 고려하여 근로 시간 및 근로일 구간별로 지원
- 개정 내용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.

☞ (참고) 일자리 안정자금 누리집(www.jobfunds.or.kr) > 사업소개(지원대상·요건 등)

<일자리안정자금 6개월간 계속 지원>

- 추진배경: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소상공인·영세사업주의 경영부담 경감 및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안정
- 주요내용
 - 월평균 보수 230만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체에 해당 노동자 1인당 월 3만원 지원
 - 주 40시간 미만 및 일용직 노동자는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 구간별로 지원
- 시 행 일: 2022년 1월 1일

2022년 안전투자 혁신사업 개편 시행

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 ☎ 044-202-8851)

- 코로나19로 인한 침체된 경기부양 등을 위해 K-뉴딜 일환으로 시행 중인 안전투자 혁신사업이 2022년 개편 시행됩니다.
- 위험기계교체 지원대상은 기존 이동식크레인 등 3종에 노후 (30년 이상) 안전검사 대상기계(6종)가 추가됩니다.
* (6종) 프레스, 전단기, 크레인, 사출성형기, 컨베이어, 롤러기
- 위험공정개선 지원대상은 뿌리산업(주조·소성가공·표면처리)에서 추락·끼임 사고사망 고위험 3대 업종으로 확대됩니다.
* 산업재해보상보험 업종 중 기계기구·금속·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(218), 화학 및 고무제품제조업(209), 수제품 및 기타제품제조업(229)
- 아울러, 지원대상 확대를 위해 위험기계교체는 최대 7천만원으로 지원한도가 조정됩니다.(단, 위험공정 개선은 지원한도 동일)

☞ (참고) 고용노동부 누리집 > 정책자료 > 정책자료실

<2022년 안전투자 혁신사업 개편 시행>

- 추진배경 : 구조적 위험성이 있거나 노후된 위험기계교체 및 노후 뿌리산업·사고사망 고위험 업종 유해위험공정 개선 지원을 통해 사고사망 예방을 위한 근원적 안전확보
- 주요내용
 - (지원대상) 산재보상보험 가입 50명 미만 사업장 사업주
 - (지원분야)
 - 위험기계교체(이동식크레인, 고소작업대, 리프트, 노후 안전검사대상(6종))
 - 위험공정개선(뿌리산업(주조·소성가공·표면처리), 고위험 3대 업종)
 - (지원한도) 위험기계교체(최대 7천만원), 위험공정개선(최대 1억원)
- 시 행 일 : 2022년 1월

국가·지자체,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

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(☎ 044-202-7498)

-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넓히기 위해 **국가·지자체와 공공기관** (근로자 50인 이상)의 장애인 **의무고용률이 3.6%**로 상향됩니다.
 - 현행 : 국가·지자체,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3.4%
 - 개정 : 국가·지자체, 공공기관 **장애인 의무고용률 3.6%**
- 개정내용은 **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**됩니다

장애인 근로자 신규고용 및 고용유지 시 장려금 지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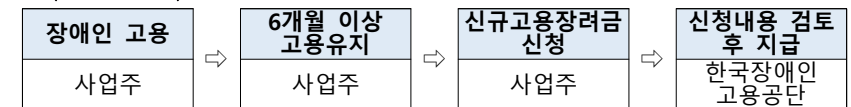
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(☎ 044-202-7498)

-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**사업주**(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)가 장애인 근로자를 **신규로 고용**하고 **6개월 이상 고용**을 유지한 경우 “**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**”을 지급합니다.
 - 해당 사업은 **2022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 근로자**를 **신규로 고용**한 사업주에 대하여 지원합니다.
- 구체적인 **지원금액과 지원절차**는 다음과 같습니다
 - **(지원금액)** 장애인 근로자의 성별 및 장애 정도에 따라 6개월 고용유지시 180~480만원, 1년 고용유지시 360~960만원

(단위: 만원)

구분	6개월 지원금액	1년 지원금액	비고
경증남성	180 (30만원X6)	360 (30만원X12)	월임금의 60%와 단가(월 30만원~80만원) 중 낮은 금액 지급
경증여성	270 (45만원X6)	540 (45만원X12)	
중증남성	360 (60만원X6)	720 (60만원X12)	
중증여성	480 (80만원X6)	960 (80만원X12)	

○ (지원절차)



☞ (참고)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27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) 및 제28조의2(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특례)

<국가·지자체,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>

- **추진배경** :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촉진 유도
- **주요내용** :
 - 국가·지자체,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단계적 상향
* ('22~'23년) 3.6% → ('24년~) 3.8%
- **시행일** : 2022년 1월 1일

☞ (참고) 고용노동부 및 장애인고용공단 누리집 사업공고 예정

<장애인 근로자 신규고용 및 고용유지 시 장려금 지급>

- **추진배경** : 장애인의 고용 촉진 및 직업안정 도모
- **주요내용** :
 -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주가 장애인을 신규로 고용하고 지원금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지급
- **시행일** : 2022년 1월 1일

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시행

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(☎ 044-202-7560)

- 2022년 4월 14일부터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퇴직급여 보장을 위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가 시행됩니다.
- 전문적 자산운용과 기금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으로 중소 사업장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이 강화됩니다.
-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저임금 근로자(최저임금 120% 미만)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의 10%(3년 한시)를 지원*합니다.
- 사업주 부담 완화 및 근로자 수익률 향상을 위해 최저수준 수수료가 적용(수수료율 0.2% 예정)됩니다.

☞ (참고) 고용노동부 누리집>보도자료>"임금채권보장법 등 7개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"

<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시행>

- 추진배경 : 상대적으로 장기적인 노후소득보장을 받지 못하는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의 퇴직급여 보장을 위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
- 주요내용 : 근로자들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화하여 전문적 자산 운용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 → 규모의 경제 달성 및 적립금 운용 성과 제고를 통해 퇴직급여 지급권을 두텁게 보장
- 시행일 : 2022년 4월 14일

「신·구 대비표」

구 분	변경 전	변경 후	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 관계 부서
최저임금액 인상	□ 2021년 최저임금: 시간급 8,720원(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 1,822,480원) □ 최저임금 산입범위: 상여금 15%, 복리후생비 3% 초과 금액(월환산액 기준)	□ 2022년 최저임금: 시간급 9,160원(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 1,914,440원) □ 최저임금 산입범위: 상여금 10%, 복리후생비 2% 초과 금액(월환산액 기준) ☞ (참고) 고용노동부 누리집>정보공개>법령정보>훈령·예규·고시	2022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(‘22.1.1.)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정책과 (044-202-7970)
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시행	□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2개 직종 고용보험 적용 * 보험설계사,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, 대출모집인, 학습지 방문강사, 교육교구 방문강사, 택배기사, 대여제품 방문점검원, 가전제품 배송 설치기사, 방문판매원, 화물차주, 건설기계조종사, 방과 후 학교 강사(초·중등)	□ 적용 직종을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퀵서비스기사·대리운전기사 확대 ○ 실업급여 및 출산전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음 ☞ (참고) 고용노동부 누리집 > 정책자료 > 정책자료실	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 험료징수법 (‘22.1.1.) 고용노동부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단 (044-202-7919)
관광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	□ (적용대상) 30인 이상 300인 미만 민간기업 (‘21.1.1.~)	□ (적용대상) 5인 이상 30인 미만 민간기업(‘22.1.1.~) ☞ (참고) 고용노동부 누리집 > 정책자료 > 정책자료실 (사장님 달력의 빨간날은 우리도 쉬는 날이에요)	근로기준법 (‘22.1.1.) 고용노동부 임금근로 시간과 (044-202-7973)

구 분	변경 전	변경 후	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 관계 부서
고용상 성차별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 시행	□ (신 설)	□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도입 ○(시정신청 대상) 고용상 성차별,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 위반 ○(시정명령 내용) 차별적 처우의 중지, 근로조건 개선, 적절한 배상 등 ○(미이행 시) 확정된 시정 명령 미이행 시 1억원 이하 과태료 부과 ☞ (참고) 고용노동부 누리집> 정책자료 > 정책자료실	남녀고용 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(‘22.5.19.) 고용노동부 여성고용 정책과 (044-202 -7472)
‘3+3 부모 육아휴직제’ 신설 및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 인상	□ 육아휴직 첫 3개월간은 통상임금의 80%(상한 150만원, 하한 70만원), 나머지 기간은 통상임금 50%(상한 120만원, 하한 70만원) 지급, 육아휴직 급여 중 일부(25%)는 직장 복귀 6개월 후 지급 *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 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, 두 번째 육아휴직자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%(상한 250만원) 지급	□ 육아휴직 전체 기간에 대한 급여를 통상임금의 80% (상한 150만원, 하한 70 만원) 지급 □ (‘3+3 부모 육아휴직제’) 자녀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, 부모 각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월 300만원(통상임금 100%) 지원 * ▲모 3개월 + 부 3개월 시 각 최대 월 300만원 지원 (통상임금의 100%) ▲모 2개월 + 부 2개월 시 각 최대 월 250만원 지원 (통상임금의 100%) ▲모 1개월 + 부 1개월 시 각 최대 월 200만원 지원 (통상임금의 100%) ☞ (참고) 고용노동부 누리집> 정책자료 > 정책자료실	고용보험법 시행령 (‘22.1.1.) 고용노동부 여성고용 정책과 (044-202 -7477)

구 분	변경 전	변경 후	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 관계 부서
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‘22년 지원규모 확대 및 조기취업성공수당 신설	□ I유형: 40만명	□ I유형: 50만명 □ 조기취업성공수당 신설 ○(지원대상) 구직촉진수당을 3회차 이내로 수급하고 '22.1.1.이후 취업한 I유형 참여자 ○(지급수준) 지급요건 충족 시 50만원 1회 지급 ☞ (참고)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(www.kua.go.kr)	- 고용노동부 국민취업 지원기획팀 (044-202 -7194)
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 신설	□ (신 설)	□ 중소기업이 취업예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시 지원 ○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, 월 80만원씩 ○ 최대 1년간 지원 ☞ (참고) 고용노동부 누리집> 정책자료 > 정책자료실	- 고용노동부 공정채용 기반과 (044-202 -7344,7448)
저소득 플랫폼종사자 등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확대	□ (신 설) □ 근로자·예술인·특고 ○ 월 보수 220만원 미만자 지원	□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설 ○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 월 보수 230만원 미만 플랫폼 종사자 및 고용사업주의 고용보험료 80% 지원 ☞ (참고) 고용노동부 누리집> 정보공개>법령정보>훈령· 예규고시 □ 근로자·예술인·특고 ○ 월 보수 230만원 미만자 지원 * 다만, 근로자(일용근로자) 경우 1년(6개월) 이내 가입 이력이 없는 경우 지원 ☞ (참고) 고용노동부 누리집> 정보공개>법령정보>훈령· 예규고시	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등에 관한 고시 (‘22.1월) 고용노동부 고용지원 실업급여과 (044-202 -7350)

구 분	변경 전	변경 후	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 관계 부서
K-Digital Training 훈련유형 신설	☐ K-Digital Training ○ 훈련기관과 디지털 신기술 기업이 훈련과정 설계·운영에 대한 협약을 체결 기업의 인력수요에 맞춘 현장 맞춤형 훈련 과정 운영	☐ 훈련유형 ○ 디지털 신기술 아카데미 - 기존 유형 ○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 - 벤처기업 협회, 코리아 스타트업포럼 등 민간 협·단체 주도 - 협·단체별 회원사의 인력 수요를 기반으로 훈련과정 설계·운영 ○ 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 - 삼성 KT, 포스코 등 디지털 선도기업이 직접 설계하고 운영하는 훈련과정 ○ 지역 주도형 아카데미 - 각 지역에 설치된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기업·훈련기관을 발굴·설계한 훈련과정 -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지역에 개설하며, 지역 훈련생 모집률 평가	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('22.2월~) 현장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능력 개발훈련 운영규정 ('21.9월~)
			고용노동부 인적자원 개발과 (044-202-7137) (참고)고용노동부 누리집> 보도자료>"22년 상반기 K-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 공모 실시"
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'최소 훈련시간' 요건 완화	☐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의 인정 ○ 훈련시간이 2일 이상이고, 훈련시간이 16시간 이상 (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대상으로 실시하는 훈련 과정은 훈련시간 1일 이상, 훈련시간 8시간 이상)	☐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의 인정 ○ 훈련시간이 4시간 이상	근로자직업 능력 개발법 시행령 ('22.1.1.)
			고용노동부 일학습 병행정책과 (044-202-7309) (참고)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>통합검색>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>㉞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[시행 2022. 1. 1.] 제22조제1항제1호

구 분	변경 전	변경 후	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 관계 부서
중장년 새출발 크레딧	☐ 대기업은 재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의무화('20.5월) ○ 중소기업은 적용 제외	☐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중소기업 재직자의 경력 설계 지원 ○(지원대상) 만 45세~54세 중소기업 재직자 ○(지원방식)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한도(300~500만원) 외 '중장년 새출발 크레딧' 100만원 추가 지원	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('22.2월~)
			고용노동부 신기술인력 양성총괄TF (044-202-7365) (참고) 고용노동부 누리집> 정책자료 > 정책자료실
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개편 (육아휴직 지원금 신설 등)	☐ 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 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월30만원 지급 ☐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 인건비 최대 월 80만원 지원 ☐ 대규모기업에 대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시 지원금(월 10만원)과 육아 휴직 등에 대한 대체인력 인건비(월 30만원)	☐ 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 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월30만원을 지급, 12개월 내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허용 시 특례* 적용 *(특례) 12개월 내 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처음 3개월 동안 월 200만원 지원 ☐ 육아휴직 지원금 신설에 따라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금 폐지 ☐ 대규모기업에 대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지원금 및 육아휴직 등에 대한 대체인력 인건비 폐지	고용보험법 시행령·시행 규칙 ('22. 1월) 고용창출 장려금·고용 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('22. 1월)
			고용노동부 여성고용 정책과 (044-202-7480) (참고) 고용노동부 누리집 > 정책자료 > 정책자료실

구 분	변경 전	변경 후	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 관계 부서
직장어린이집 우선지원대상기업 인건비 지원 강화	☐ 우선지원 대상기업 직장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 금액 ☐ 1인당 월 지원금 한도 45만원~120만원	☐ 우선지원 대상기업 직장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 금액 ☐ 1인당 월 지원금 한도 52만원~138만원 (참고) 고용노동부 누리집> 정책자료 > 정책자료실	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인건비 및 우선지원 대상기업 운영비 지원에 관한 규정 ('22. 1월) 고용노동부 여성고용 정책과 (044-202-7480)
고령자 고용지원금 시행	☐ (신 설)	☐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설 시행 ☐ (지원 대상) 60세 이상 근로자수가 증가한 중소·중견기업 사업주 ☐ (지원요건) - 고용 기간 1년 초과한 60세 이상 근로자수가 과거 3년보다 증가 - 피보험자 수의 30% 및 최대 30명 이내 지원한도 ☐ (지원수준) 고령자 수 증가 1인당 분기별 30만원씩 2년간 지원 (참고)고용노동부 누리집> 정책자료>대상자별 정책> 중장년-“고령자 고용지원금”	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('22.1.1.) 고용노동부 고령사회 인력정책과 (044-202-7469)

구 분	변경 전	변경 후	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 관계 부서
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	☐ 가사 서비스는 대부분 직업소개방식으로 제공 ☐ 가사종사자는 노동법 및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서 권익보호가 어려움	☐ 정부가 인정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에게 가사 서비스를 제공 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된 사업장 소속 가사 근로자의 최소근로시간·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 조건 보장 ☐ 시장원리에 기반한 가사 서비스 시장 공식화를 통해 가사근로자의 권익이 보호되고, 양질의 가사 서비스 일자리 창출 ☐ 서비스 품질이 제고되며, 여성 경제활동참여 확대의 선순환 구조 정착 (참고) 고용노동부 누리집> 보도자료> “가사근로자 노동권 보장 제도적 기반 마련”	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('22.6.16.) 고용노동부 고용문화 개선정책과 (044-202-7503)
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시행	☐ 기업규모별 단계적 시행 ☐ (20.1.1.) 공공 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 ☐ (21.1.1.) 30인 이상 사업장	☐ 기업규모별 단계적 시행 ☐ (22.1.1.) 1인 이상 사업장 (참고) 고용노동부 누리집> 정책자료 > 정책자료실	남녀고용 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('20.1.1.) 고용노동부 고용문화 개선정책과 (044-202-7467)

구 분	변경 전	변경 후	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 관계 부서
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속	□(지원 기간) 12개월 지원	□(지원 기간) 6개월 지원	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 (‘22.1.1)
	□(지원 대상) 월 평균 보수 219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	□(지원 대상) 월 평균 보수 230만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	
안전투자혁신사업 개편 시행	□(지원 수준) 해당 노동자 1명당 5인 미만 사업체 월7만원, 5인 이상 사업체 월 5만원 * 주 40시간 미만 및 일용직 노동자는 근로시간 및 근로 일수 비례 지원	□(지원 수준) 전 사업장 해당 노동자 1명당 월 3만원 * 주 40시간 미만 및 일용직 노동자는 근로시간 및 근로 일수 구간별로 지원 ☞ (참고) 일자리안정자금 누리집 사업소개(지원 대상·요건 등)	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 자금지원 추진단 (044-202-7786)
	□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 ○ (지원대상) - (위험기계교체) 이동식 크레인·고소작업대·리프트 (3종) - (위험공정개선) 뿌리산업 (주조·소성가공·표면처리) ○ (지원한도) 최대 1억원한도	□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수준 조정 ○ (지원대상) - (위험기계교체) (‘21)3종→ (‘22)3종+노후 안전검사 대상(6종) 추가 - (위험공정개선) (‘21)뿌리 산업→(‘22)뿌리산업+ 고위험 3대 업종(추가) ○ (지원한도) - (위험기계교체) 최대 7천만원 - (위험공정개선) 최대 1억원 ☞ (참고) 고용노동부 누리집 정책자료 > 정책자료실	산업재해예방 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운영 규정 (‘22. 1월)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 준과 (044-202-8851)

구 분	변경 전	변경 후	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 관계 부서
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	□ ‘21년 장애인 의무고용률 ○ 국가·지자체 - 공무원, 근로자 : 3.4% ○ 공공기관 : 3.4% ○ 민간기업 : 3.1%	□ ‘22년 장애인 의무고용률 ○ 국가·지자체 - 공무원, 근로자 : 3.6% ○ 공공기관 : 3.6% ○ 민간기업 : 3.1% ☞ (참고) 고용노동부 누리집 정책자료 > 정책자료실	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및 제28조의2 (‘22.1.1.) 고용노동부 장애인 고용과 (044-202-7498)
장애인 신규고용 장려금 지원 사업	□ (신 설)	□ 장애인 신규 고용장려금 사업 신설 ○ (대상)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주 ○ (내용) 신규 고용 및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지급 ○ (지급) 성별 및 장애정도에 따라 6개월 고용유지시 180~480만원, 1년 고용 유지 시 360~960만원 ☞ (참고) 고용노동부 누리집 보도자료 > 공고 예정	- 고용노동부 장애인 고용과 (044-202-7498)
중소기업퇴직연금 기금제도 도입	□ (신 설)	□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근거 규정 신설 ○ (재정지원) 부담금 등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☞ (참고) 고용노동부 누리집 보도자료>“임금채권보장법 등 7개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”	근로자퇴직 급여보장법 (‘22.4.14.)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복지과 (044-202-7558)